

중견기업 확인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5월 12일

중소기업청장

「중견기업 확인요령」 전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근거법령(산업발전법→중견기업법) 및 업무소관 변경(지경부→중기청)을 반영하고, 법 위임에 따라 확인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변경하는 등 중견기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

2. 주요내용

가. 중견기업 확인요령 근거법령 명시(제1조 및 제3조)

- 기존 『산업발전법』에서 『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』으로 확인요령 근거법령 변경

- 중견기업 확인업무 수행기관을 한국 중견기업연합회로 명시(제2조)

- 확인신청 및 발급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고, 전자공시시스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서류 확인 및 처리기간 단축(30일→20일) 등을 통해 신청기업 편의도모(제4조 및 제5조)

나. 확인서 재발급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신청 사유에서도 분실, 훼손 등 불필요한 사유는 삭제(제7조)

다. 중견기업법령 시행에 맞추어 시행일을 7.22일로 하고,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(부칙 제1조 및 제2조)

3. 의견제출

중견기업 확인요령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중견기업정책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*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(전화 : 042-481-6816, FAX : 042-481-6829)

중견기업 확인요령 전부개정(안) 전문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중견기업”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
2. “확인기관”이란 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.
3. “온라인 시스템”이란 중견기업 확인 신청 및 발급, 중견기업 관리,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 정보망(<http://highpotential-e.or.kr>)을 말한다.
4. “전자공시시스템”이란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업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을 말한다.

제3조(중견기업 판정기준) 중견기업 판정은 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제4조(확인신청)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(이하 “신청기업”이라 한다)은 온라인 시스템의 신청방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(별지 제1호)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확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하나로민원)에서 확인할 수 있거나,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

사보고서 등이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.

③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(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)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.

④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판정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.

제5조(확인서 발급) ① 확인기관 장은 중견기업 확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중견기업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6조(유효기간) 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.

②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(이하“창업등”이라 한다)한 기업으로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창업 등을 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확인서의 재발급) ① 중견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할

수 있다.

1. 업체명, 소재지 또는 대표자(개인사업자는 제외)가 변경되는 경우
 2.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·양수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중견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확인 취소 등) ①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확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즉시 확인을 취소한다. 이 경우 확인의 취소는 유효기간 개시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.

② 중견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제3조의 판정기준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 즉시 확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제9조(사후관리) 확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는 이 요령에 의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.

[별지 제1호]

중견기업 확인 신청서			처리기간
			20일 이내
업체명		법인등록번호	
대표자명		사업자등록번호	
본사주소		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업종명	(산업분류코드 □□□□□□)
전화번호		FAX 번호	
관계기업명	법인명	법인등록번호	사업자등록번호
	①		
	②		
	③		
	④		
<p>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중견기업임이 확인될 경우 업체명·법인등록번호·확인서 발급번호 공개를 동의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업체명 _____ 대표자명 _____ (직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귀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출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.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. 직전 3개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1부(재무제표,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,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 8조에 따라 제출한 감사 보고서 등) 4. 주주명부 1부(법인에 한함) 5.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제2~4호에 해당하는 서류(법인에 한함) 6. 법인등기부등본 1부(법인에 한함) 7. 주식 등 지분관계도 1부(법인에 한함) 			

【서식 1】

주식 등 지분관계도

◇ 지분소유비율

(%)

주주명 \ 기업명	당 사	A법인	B법인	C법인	… 법인
당 사					
A법인					
B법인					
C법인					
… 법인					
개인					
개인의 친족					
기타					

◇ 상시근로자수 등 현황

현황 \ 기업명	당 사	A법인	B법인	C법인	… 법인	합계
법 인 번 호						
상시근로자수(명)						
자본금(백만원)						
자본잉여금(백만원)						
매출액(백만원)						
자본총계(백만원)						
자산총액(백만원)						
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매출액(백만원)						

◇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 현황

-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의2(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선정) 적용

현 황	해당여부
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가?	
연결재무제표 사용 또는 지배 종속의 기업이 있는가?	
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%이상을 직접적,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있는가?	
상시근로자수 1,000명 이상에 속하는가?	
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에 속하는가?	
자기자본(자산총액-부채총액) 1,000억원 이상에 속하는가?	
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1,500억원 이상에 속하는 기업인가?	
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견기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既지원 받은 내용의 무효 및 취소, 회수 등 일체의 사 후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 : 회 사 명
대 표 이 사 : ○ ○ ○ (인)

[별지 제2호]

<발급번호 : 제0000-000호>

중견기업 확인서

업 체 명 :

대 표 자 명 :

법 인 번 호 :

(사업자등록번호 :)

주 소 :

유효기간 :

위 업체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합니다.

201 년 월 일

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

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함

[별지 제3호]

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			처리기간
신청인	업체명	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	확인서발급번호
	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업종명	(산업분류코드 □□□□□□)	
	주소		전화 팩스
재발급신청내용(해당란에 ○표)			
구분	변경내용		
	업체명 변경	영위사업 양도·양수	
<p>「중견기업 확인요령」 제6조에 의하여 중견기업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>업체명 _____ 대표자명 _____ (직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귀하</p>			
구비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합병 계약서 사본 등 해당사유 입증서류 ○ 법인등기부등본 1통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		